

1. 개정이유

항만시설 보안검색 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 검색장비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성능인증 기준, 성능 점검 및 검사, 시험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17615호, 2020.12.8. 공포, 2021.12.9. 시행(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2. 주요내용

가.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안 제37조의3 신설)

엑스선 검색장비, 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폭발물 탐지 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 검색장비 등 8종의 장비로 정함

나. 성능인증 기준 마련(안 제37조의4 신설)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도록 하고 장비별로 성능, 기능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

다. 성능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37조의5 신설, 별지 제21호 의6, 별지 제21호의7 및 별지 제21호의8 서식 신설)

성능인증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성능시험 및 결과서 제출, 인증서 발급, 성능인증심사 위원회 구성 등 성능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

라. 성능 점검 및 성능 검사(안 제37조의6 및 제37조의7 신설)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성능 인증 시의 품질 및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소유자가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 내용연수를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마. 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37조의8 및 제37조의9 신설,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 신설, 별지 제21호의9 및 별지 제21호의10 서식 신설)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인증 수수료 등 부과기준(안 제37조의10 및 별표 3의5 신설)

성능 인증, 성능 시험, 성능 검사 등 관련 수수료를 정하고 기본료, 인건비, 직·간접비용 등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 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금속탐지기 또는 비파괴 영상검색장비 등(이하 이 조에서 “검색장비”라 한다)”을 “제37조의3의 보안검색장비를”으로 하고, “이 경우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있다고 의심이 되면 폭발물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는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를 말한다.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항만보안검색장비의 기능과 성능 기준에 적합한 장비일 것
2. 항만보안검색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춘 장비

일 것

제37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의5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선급법인(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보안검색장비의 구조·외관도
5. 보안검색장비의 사용·운영방법·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보안검색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제37조의4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 등이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보안검색장비가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 요청 및 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① 인증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항만보안검색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및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의 유지 여부 등에 관해 매년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직원, 시험기관 및 관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제37조의7(보안검색장비의 성능 검사)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항만보안검색장비를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를 연장해 계속 사용하려면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 검사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시험설비 등을 적은 사업 계획서
4.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5.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의 향만보안 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2. 시험기관의 소재지
3. 시험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⑤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조직·인력 및 시험설비
2. 시험접수·수행 절차 및 방법
3. 시험원의 임무 및 교육훈련
4. 시험원 및 시험과정 등의 보안관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0조의7제2항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험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7조의10(수수료) ①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0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7조의5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수수료

2. 제37조의7에 따른 성능 검사에 관한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내야하는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③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해서 공고해야 한다.

별표 3의3부터 별표 3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1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항만시설소유자는 법률 제1761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9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항만보안검색장비 중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

증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를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의3]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안)(제37조의8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가. 「보안업무규정」 제10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기관일 것
 -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인력이 라목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보안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력을 보유할 것
 - 나. 인정기구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다.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장비의 시험·평가 또는 관련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 시험할 것
 - 가. 다음의 시설을 모두 갖춘 시험실
 - 1) 항온항습 시설
 - 2)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시설
 - 3) 화학물질 보관 및 취급을 위한 시설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나. 엑스선검색장비 이미지품질평가용 시험용 장비(테스트 키트)
 - 다. 엑스선검색장비 표면방사선량을 측정장비
 - 라. 엑스선검색장비 연속동작시험용 시설
 - 마. 엑스선검색장비 등 대형장비용 온도·습도시험실(장비)
 - 바. 폭발물검색장비·액체폭발물검색장비·폭발물흔적탐지장비 시험용 유사폭발물 시료
 - 사. 문형금속탐지장비·휴대용금속탐지장비·시험용 금속물질 시료
 - 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및 시험용 낙하시험 장비
 - 자. 시험데이터 기록 및 저장 장비
 - 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별표 3의4]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안)(제37조의9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한 개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서 처분기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해서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서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또는 사유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7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의7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7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지정취소
라.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의7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0일)	업무정지 (120일)	지정취소
마.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7 제1항제5호	경고	경고	지정취소
바.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해서 수행한 경우	법 제30조의7 제1항제6호	업무정지 (90일)	지정 취소	

수수료 부과기준(제37조의10제2항 관련)

구분	수수료
인증기관의 성능 인증 등 수수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 1. 기본료: 성능 인증, 인증서 변경, 성능 검사 신청서의 접수 사무 및 신청서류 심사,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 2. 인건비: 성능 인증, 성능 검사 업무에 참여한 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시간당 인건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시간당 인건비는 인증기관에서 책정한 인건비를 적용 3. 간접비용: 성능 인증, 성능 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임원 및 지원부서 직원 등의 간접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전기료 등의 경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한 비용 4. 직접비용: 성능 인증, 성능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여비, 시험·검사 결과 및 적합성 자료의 분석을 위한 도서구매 및 번역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의 비용: 성능 인증, 성능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모품비, 통신비, 운송비, 정보활용비, 회의비, 공과금 및 연구활동비 등을 포함한 경비
시험기관의 성능 시험 수수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 1. 기본료: 시험 접수·검토·인력지원·성능평가지험, 성능 검사 등에 필요한 기본수수료 2. 인건비: 시험활동에 투입된 수행 인력의 시험수행 시간당 인건비(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3. 재료비: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4. 장비사용료 가.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비용 나. 시설유지비: 장비가동을 위해서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그 밖의 시설유지비 5. 출장비: 시험활동에 투입되는 수행 인력의 현장출장 여비 6.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시험을 위해서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 시험·검사대상 인증제품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
--	--

비고

1. 위 각 호의 수수료는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하는 비용을 내고,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인증서·시험 결과서를 교부할 때 명세서를 발급해서 정산한다.
2.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국내외 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비용은 각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서 마련한 규정에 따른다.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기간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제작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사업자 명칭)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종류	
	장비명(모델명)	
	제작자	제조국가
	시험기관	
그 밖의 특기사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외관도 및 사용자 설명서 5. 항만보안검색장비의 구조·운영방법·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보안검색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서류로서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인증기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인증기관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 인증기관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및 검토 인증기관	→	시험계획서 시험기관	→	성능평가시험 시험기관	→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시험 결과서

시험기관		발급일	
접수번호		발급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사업자 명칭)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시험 결과	장비 종류(모델명)		일련번호(S/N)
	제작자		제조국가
	시험수행일		발급 번호 제 호
	시험 방법		
	시험 결과 적합 [], 부적합 []		
	그 밖의 특기사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시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 험 기 관 장



인증기관장 귀하

제 호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

1. 제작자 성명(대표자) 또는 명칭:
2. 사업장 소재지:
3. 장비 종류:
4. 장비명(모델명) 및 일련번호(S/N):
5. 장비 성능 인증 유효기간:
6. 제작자(제조국가):
7. 시험기관:

위의 항만보안검색장비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 장비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장

직인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 호 (법 인 또 는 단 체)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시험업무의 수행범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시험설비 및 절차·방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계획서 4.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시험기관의 품질관리규정 5.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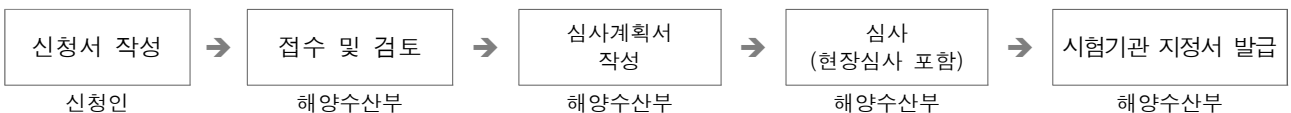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

제 호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자: (생년월일:)
3. 소 재 지:
4. 업무 수행 범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①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의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금속탐지기 또는 비파괴영상검색장비 등(이하 이 조에서 “검색장비”라 한다)을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있다고 의심이 되면 폭발물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① ————— ————— ————— ————— ————— ————— 제37조의3의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는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 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를 말한다.

<신 설>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항만보안검색장비의 기능과 성능 기준에 적합한 장비일 것
2. 항만보안검색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춘 장비일 것

<신 설>

제37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의5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선급법인(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보안검색장비의 구조·외관도

5. 보안검색장비의 사용·운영방법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보안검색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제37조의4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 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③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 등이 제37조의4

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설>

⑤ 인증기관은 보안검색장비가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 요청 및 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① 인증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항만보안검색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및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의 유지 여부 등에 관해 매년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직원, 시험기관 및 관계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제37조의7(보안검색장비의 성능 검사)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항만보안검색장비를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를 연장해 계속 사용하려면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 검사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시험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시험설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4.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5.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

<신 설>

<신 설>

<신 설>

지 제21호의10서식의 항만보안검 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 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 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2. 시험기관의 소재지
3. 시험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⑤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 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조직·인력 및 시험 설비
2. 시험접수·수행 절차 및 방법
3. 시험원의 임무 및 교육훈련
4. 시험원 및 시험과정 등의 보안관 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0조의7제2항의 “지정취소 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은 별표 3 의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

<신 설>

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험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7조의10(수수료) ①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0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7조의5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수수료

2. 제37조의7에 따른 성능 검사에 관한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내야하는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③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해서 공고해야 한다.